2022-10-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

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. 7. 18. 선고 2018고단 2127 판결 특수상해,모욕,재물손괴

부 산 지 방 법 원 서 부 지 원

판 결

사건 2018고단2127 특수상해, 모욕, 재물손괴

피고인 A

검사 권가희(기소), 나상돈(공판)

변호인 변호사 고은솔(국선)

판결선고 2019. 7. 18.

주 문

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.

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이 유

범죄사실

1. 특수상해, 재물손괴

피고인은 2018. 3. 4. 05: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(여, 54세) 운영의 D주점 2번 코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여 실랑이가 되자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산과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소주잔 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손가락으로 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고, 시가 미상의 소주잔 등 유리잔 40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.

2. 모욕

피고인은 2018. 3. 4. 05:30경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특수상해, 재물손괴한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자 C, F 등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G에게 "개새끼들아 내가 뭐 큰 죄지었냐. 씹할 놈들아, 너그들 마음대로 해봐라! 내가 죽을 죄를 지었냐. 내보다 돈도 적게 버는 놈들아."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2022-10-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

- 1. 피고인의 법정진술
- 1. C, F,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
- 1. 현장 및 피해사진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형법 제258조의2 제1항, 제257조 제1항(특수상해의 점), 형법 제366조(재물손괴의 점, 징역형 선택), 형법 제311조(모욕의 점, 징역형 선택)

1. 경합범가중

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(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)

1. 작량감경

형법 제53조, 제55조 제1항 제3호

1. 집행유예

형법 제62조 제1항

1. 사회봉사명령

형법 제62조의2

양형의 이유

- 1.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: 징역 6개월 7년
- 2.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
- 가. 제1범죄(특수상해)

[유형의 결정] 폭력범죄 > 02. 특수상해·누범상해 > [제1유형] 특수상해

[특별양형인자] 감경요소: 처벌불원

[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] 감경영역, 징역 4개월~1년

나. 제2범죄(재물손괴)

[유형의 결정] 손괴범죄 > 01. 일반적기준 > [제1유형] 재물손괴 등

[특별양형인자] 감경요소: 처벌불원

[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] 감경영역, 징역 1개월~6개월

- 다.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: 징역 4개월 이상(양형기준 미설정 범죄[1]와의 경합범)
- 라.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: 징역 6개월 이상(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)
- 3. 선고형의 결정: 징역 8개월, 집행유예 2년

[불리한 정상]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 등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, 소주잔을 손괴하였으며,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. [유리한 정상]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. 피고인은 특수상해,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.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.

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, 성행, 환경, 가족관계,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,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2022-10-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

판사 정성종

미주

[1] 1) 이 사건 범행 중 모욕죄는 해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기소되었으므로,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.